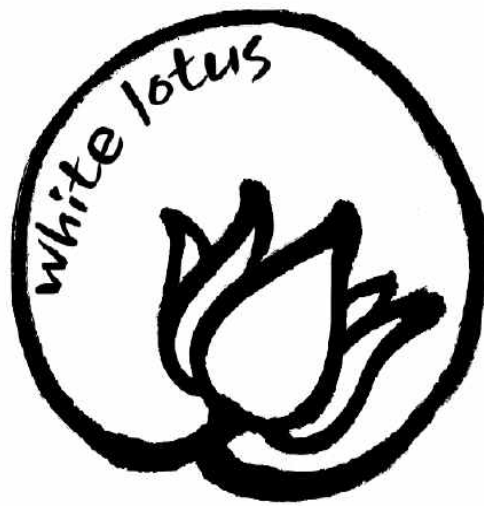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I.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1

목 적

-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 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 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 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 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발췌)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5

시설 생활 노인인권 침해사례

1)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한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 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썼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보낼 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거야 안 할거야.
대답해 봐 얼른... “ ”으~구! 이러니까 이런데 대려다 났지..“

3)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한 어르신은 편마비임 에도 낮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르신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4) 별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자기 성에 차지 않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종사자들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마다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II.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노인학대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2 제3호)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자기방임포함)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 특성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학대 가해자의 특성, 관계적 특성, 가정 환경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노인의 특성

- 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 ②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 노인이다.
- ③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2) 학대 가해자의 특성

- 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 ②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다.
- ③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3) 관계적 특성

- ①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② 가족 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4) 가정 환경적 특성

- ① 경제적 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5) 사회구조적 특성

- ①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 사상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가 해당된다.
- ②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③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3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게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행태적분류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1.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1.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1.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1.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1.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1.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1.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1.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1.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1.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경제적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1.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1.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1.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1.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4

노인학대 발생요인

노인학대원인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관련 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 요인, 가정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적 특성 :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
- 노인의 의존성 : 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
-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 :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
- 가정환경적 요인 :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합의 갈등 등
-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함.
- 사회문화적 요인 :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신체적·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②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③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⑥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⑦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⑧ 어려운 생활주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 가족상황적 요인

요 인	내 용
①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②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④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요인

요 인	내 용
①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③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5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대상

(1) 학대피해노인

- ①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 ①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 ⑤ 서신에 의한 접수
-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6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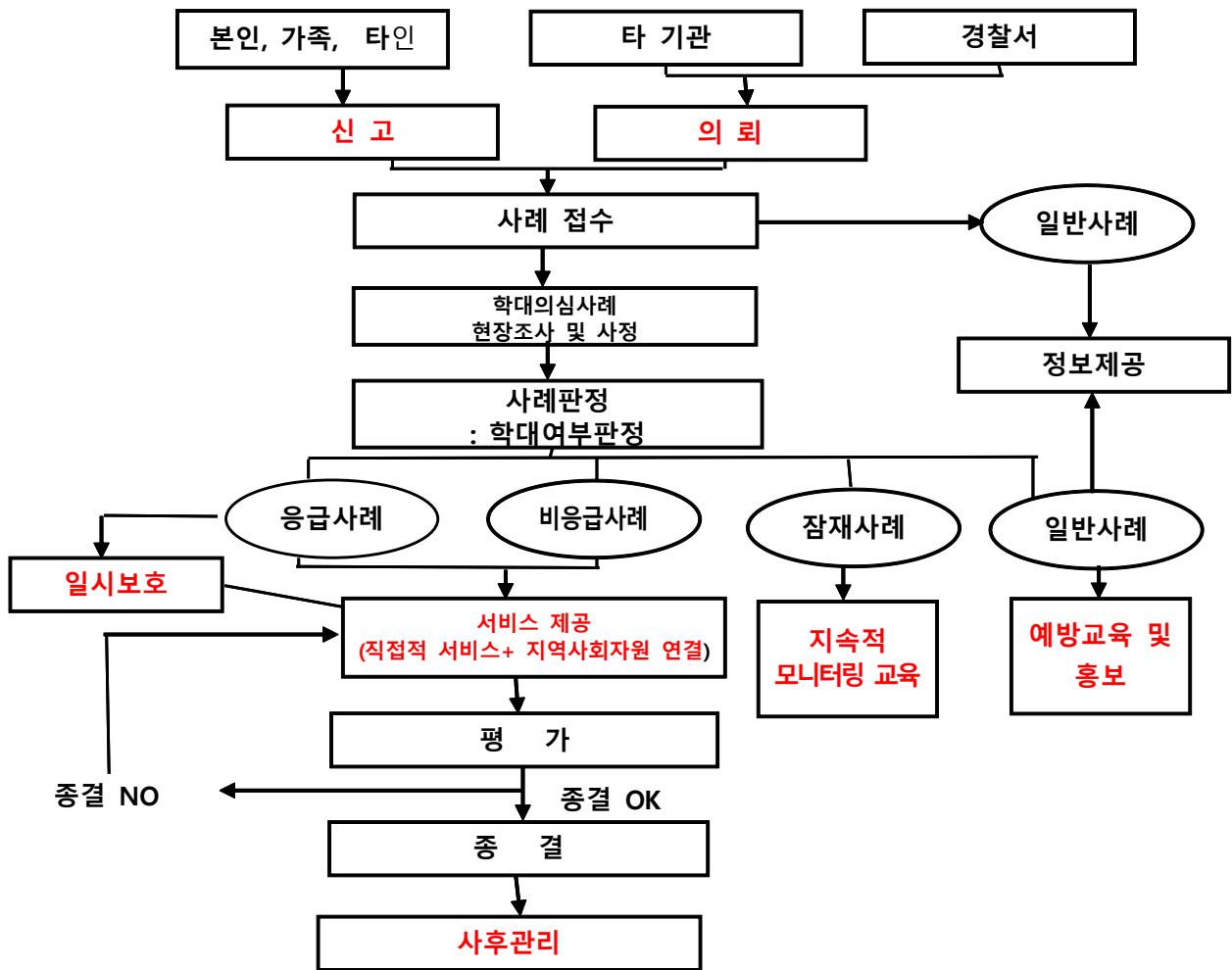
-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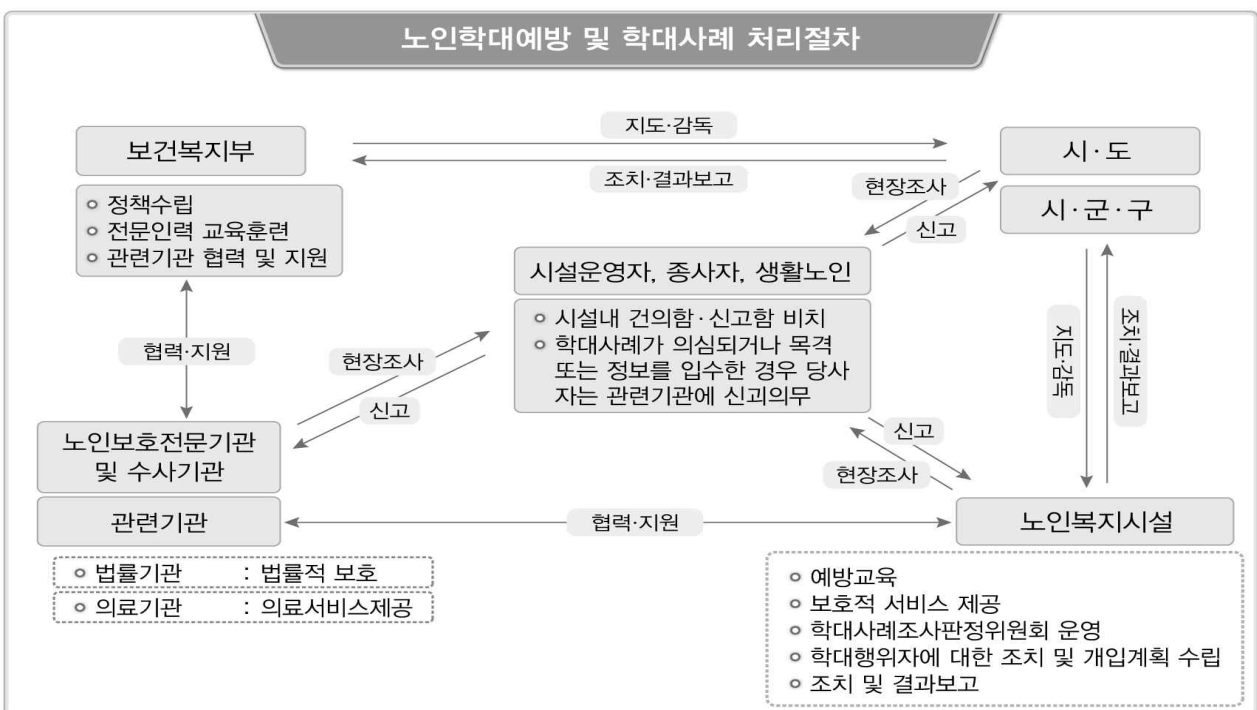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⑥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 ① **시.군.구 역할:** 보호조치 의뢰에 대한 행정조치, 학대행위자 신분조회 협조, 조사,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 ② **노인복지시설 역할과 임무:** 시설 내 학대예방 및 학대행위 조기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 노인에게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 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 ③ **노인학대 예방센터:**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 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④ **경찰:** 노인학대 신고사실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⑤ **의료기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 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해 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⑥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 ⑦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내용**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1577-1389
 - 노인학대 상담개입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1577-1389 / 보건복지센터 129
 -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 확립: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 제공
 -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취함.

- ①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고발 후 학대노인 어려움 없도록 조사, 처벌강화. 학대가족 사회적 활동제한, 공표.치료명령제 도입, 신고자 법적 보호조치, 비밀보장강화. 신고 의무화.
- ② **캠페인 홍보강화:** 시민인식 확대. 가족사랑 캠페인. 공공기관 노인학대 예방 자료제공.
- ③ **노인학대예방 교육강화:** 통반장 학대예방.신고교육. 젊은층 학대예방.인성교육.
- ④ **기타의견:** 노인여가시설확충. 능력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원. 가족 분리 주거공간 마련

- ①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의 제거한다.
- ② 피해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한다.
-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 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 등의 종합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⑥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자 신체 제재를 하지 않는 요양원 만들기 프로젝트

- ① 노인학대예방 관리시스템: 원장,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
- ② 수급자 신체제재 원인을 분석한다.
- ③ 일상 업무를 재 검토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 ④ 신체제재를 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 방지책을 검토한다.
- ⑤ 신체제재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케어실천사례를 정리하고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 긴급 혹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한 수급자 제재

- ① **절박성:**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때.
- ② **비 대체성:** 신체구속, 행동제한을 하는 것 이외에 대체할 케어방법이 없을 것.
- ③ **일시성:** 신체구속 기타 행동제한이 일시적인 것일 것.

❖ 수급자 신체 제재 행위들을 지양한다

- ① 배회하지 않도록 휠체어나 의자에 몸이나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 행위
- ② 떨어지지 않도록, 타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침대 등에 몸이나 사지를 묶는 행위
- ③ 혼자서 내려올 수 없도록 침대를 창살로 둘러치는 행위
- ④ 경관영양주사 등의 튜브를 빠지 못하도록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 행위
- ⑤ 피부를 긁지 못하도록 손가락 기능을 제한하는 미톤형 장갑 끼우고 묶는 행위
- ⑥ 휠체어·의자에서 떨어지거나 일어서지 못하도록 Y자형 억제대·허리벨트·식판사용
- ⑦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일어서기를 방해하는 듯한 의자를 사용한다.
- ⑧ 탈의나 기저귀 빼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치매 복을 입힌다.

- ⑨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향 정신성 약을 과도하게 복용시킨다.
- ⑩ 자신의 의사로 열 수 없는 방 등에 격리한다.

❖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의 권리

- 노인요양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 서비스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개인정보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신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어르신 침실을 정할 때,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유사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것이 좋으나,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매년 변화함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고, 자신에게 친숙한 물건을 가져와 개인 수납공간에 진열하실 수 오실 수 있도록 하며 잠금장치가 장착된 개별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입소 어르신이 침실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의 의무

-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및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노인에 대한 존중.
- 장기요양기관과 체결 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 직원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1. 노인학대예방 7대 수칙

-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 1)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 2)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 보십시오.
- 3) 어르신이 외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 4)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 5)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 6)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 7)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8)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대응지침

1.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시설 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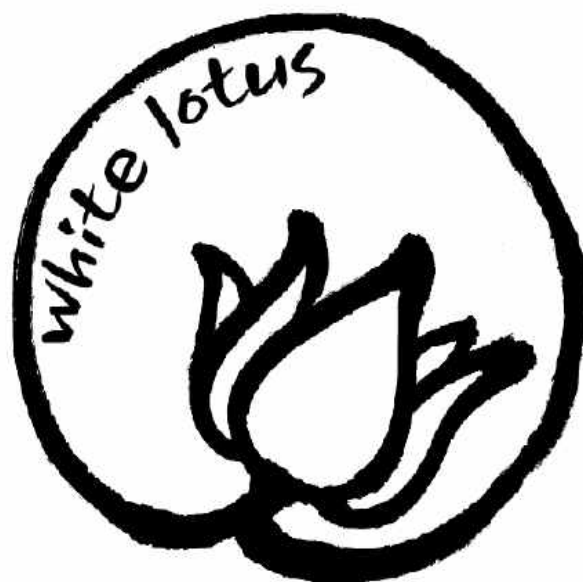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전라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577-1389**

노인인권보호 비치자료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